

2022 . 3 . 11 .

수 신 : 의 장

제 목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운영위원장(장옥준) 불신임안 발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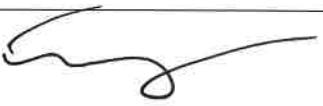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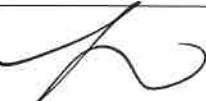
위 운영위원회 위원장 불신임안을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발의 합니다.

붙임: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운영위원장(장옥준) 불신임안 1부. 끝.

신청인(요구자) 별지 서명부와 같음

(신청인 서명부 붙임)

## 신청인(요구자) 서명부

의 원 명	서명 또는 날인
이 원근	
김 성각	
이 현수	2011.5
고 광민	
오 세경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운영위원장 (장옥준) 불신임안

의 안 번 호	613
------------	-----

청구연월일 : 2022. 3. 11.

신청인(요구자) 별지 서명부와 같음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 서초구의회

피신청인 장 옥 준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 서초구의회

위 신청인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불신임안을 제출합니다.

2022. 3. 11.

신청인(요구자) 별지 서명부와 같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귀중

## 불신임 사유

피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조례」 제34조 (상임위원장)에 따라 2018년 7월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였고, 서초구의회 개원 이래 전, 후반기 4년 동안 운영위원장은 동일인이 한 사례가 없었음에도 이러한 관례를 무시하고 2020년 7월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재임 중 이었다.

장옥준 의원이 상반기뿐만 아니라 하반기 때에도 운영위원회를 맡으며 김 안숙 전 의장을 막후에서 조정하여 사실상 의장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지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및 무소속 최종배 의원은 의회에서의 정쟁이 서초구민들의 공공복리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끼칠 것이라 생각되어 그 동안 장옥준 의원의 전횡을 참아왔다.

그러던 중 장옥준의원의 주도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행정복지위원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기하여 의회가 파행되는 사태가 발생되었다.

이와 같은 사유로 2022.2.7. 장옥준 운영위원장에 대한 불신임안이 가결되어 운영위원장직을 상실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사유를 제외하고

장옥준 운영위원장은 2022.2.7. 현재까지 전경희 의원이 2021.5.27.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5건의 조례 및 규칙을 정당한 사유 없이 상정·심의하지 않아 그 직무를 태만히 하였으며, 위원회 내의 다양한 의견과 갈등을 조정하여야 하지만, 무능력으로 인하여 방관한 책임이 있다. 이러한 전반적인 의회 운영의 불성실과 업무 해태 등 운영위원회의 운영 무능력에 따른 직무유기로 구의회의 파행에 대한 책임이 있다.

지방의회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소집, 개회시간 결정, 의사일정 작성 등과 회의를 진행하는 등 관련 직무를 수행할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경희 의원 등이 제출한 의안(의회 기본조례 및 회의 규칙) 들을 8개월이 지나도록 상정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그 직무를 명백히 해태하였다.

이러한 사유는 아래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서초구의회 기본조례 제35조에 의거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음에 따라 본 불신임안을 제출하게 되었다.

## 〈지방자치법〉

### 제44조(의원의 의무)

- ① 지방의회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지방의회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지방의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③ 지방의회의원은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 ④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제4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및 그 기관·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시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지방의회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범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67조(위원회의 권한)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 또는 지방의회가 위임한 특정한 안건을 심사한다.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 제12조(의장의 직무 등) ①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한다.

- ② 의장과 부의장 · 위원장은 의원의 의정활동에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고 의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 제23조(의원의 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였거나, 못할 경우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 또는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그 밖의 의원의 청가 및 결석에 관한 사항은 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 제35조(상임위원장 불신임의 의결) ① 상임위원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제41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윤리강령의 준수)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개정 2019. 11. 7.>

1.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의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공익 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4. 의원 상호 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5.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사(公私)행위에 대하여 주민에게 책임진다.